

# 미국에서의 인터넷 소송 동향

박 환 일 (경희대 법대 조교수)

##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온라인 계약 집행상의 문제                            |
| 2. 인터넷을 이용한 송달<br>- 리오 인터내셔널 사건(2002년)                          | 가. 한다-로페스 사건(1998년)<br>나. 넷스케이프 사건(2001년)    |
| 3. 인터넷상의 재판관할 문제<br>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최소한의 접촉 이론<br>나. 남 타이 사건(2001년) | 다. 넷츠카운트 서비스 사건(2002년)<br>라. 인터넷 소송에 관한 입법동향 |

---

사이버공간에서는 법적인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정보기술(IT)의 진보가 워낙 빨라 법·제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대중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5-6년에 불과하여 아직은 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 판례보다 하급심 판례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 법정에서 다루어진 사건을 보면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중요한 사건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

## 1. 머리말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나 정보제공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문서를 작성할 겨를도 없이 온라인 상으로 즉각 이루어지므로 이를 기존 법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과 기술의 진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종래 '인터넷 소송' 하면 인터넷상의 분쟁해결, 특히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B2B, B2C 등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주로 문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다.<sup>1)</sup>

그러나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의 내용을 보면 그뿐만이 아니다. 이하 미국 애플컴퓨터사의 법무실장(Director)인 요시가와 다쓰오(吉川達夫) 변호사가 "미국 사이버스페이스 소송법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미국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sup>2)</sup> 그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송달, 인터넷 재판관할

1) 석광현,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인터넷법연구』 제2호(2003), 429~467면 참조.

의 문제, 온라인 계약의 집행가능성이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이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한다.

## 2. 인터넷을 이용한 송달

### - 리오 인터내셔널 사건(2002년)

2002년 3월 미국의 제9지구 고등법원은 리오 인터내셔널 인터링크(RII) 사건[*Rio Properties v. Rio International Interlink*, CV-99-01653-PMP, March 20, 2002]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에 대하여 e-메일로 송달한 것이 유효하다고 선언하였다. 인터넷 송달은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도 유효하다고 본 적이 있지만[*In re International Telemedia Ass'n*], 연방고등법원의 판결로서는 이 사건이 처음이다.

미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4조(f)에 의하면 당사자가 송달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해외송달은 다음 방법으로 해야 한다. 즉 헤이그 조약 같은 국제협정, 당해 국가의 송달에 관한 판결, 국제협정으로 금지되지 않은 방법 중의 하나로 하면 된다. 리오 사건에서는 인터넷 송달을 국제협정으로 금지되지 않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리오 는 라스베가스에서 리오 올 스위트 카지노 리조트 등 여러 개의 카지노 호텔을 경영하면서 RIO를 등록상표로 하여 'www.playrio.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RII는 미국에서 수신자부담 통신회선과 'www.riosport.com'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스포츠 도박을 운영하면서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잡지에 광고를 하고 있었다. RII는 미국 내에 지점은 두지 않았지만 플로리다주에 대금수취 에이전트를 두고 email@betrio.com이라고 하는 e-메일 계정을 갖고 있었다.

리오는 RII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내 에이전트에 송달을 하였으나 에이전트는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하여 송달에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리오는 코스타리카에서 RII에 송달을 하였으나 주소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되었다.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조(h)(2) 및 동 제4조(f)에 의하여 e-메일을 포함한 기타 수단에 의하여 송달을 하는 것이 인정되어 연방지방법원은 RII에 대하여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리오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RII는 e-메일에 의한 송달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항소하였다.

제9지구 연방고등법원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조(f)(3)의 적용 여부, e-메일 송달의 합리성을 심리하였다. 원고가 어떠한 수단으로도 송달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송달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e-메일에 의한 송달은 연방민사소송규칙이 인정하는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미국에서는 송달이 무엇보다도 헌법상

2) 吉川達夫, “米國サイバースペース訴訟法動向”, 『國際商事法務』 Vol.30, No.7 (2002. 7.) 909~913면.

의 적법절차(Due Process)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 바, 이 사건에서는 e-메일에 의한 송달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것이어서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미국에서 인터넷 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e-메일을 유일한 통신수단으로 사용한다면 e-메일을 송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연방고등법원은 RII의 경우 미국에 “사무실도 없고 오직 컴퓨터 단말기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다른 케이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대인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RII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e-메일을 송달수단으로서 인정할 경우 소송당사자인 수취인이 e-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수취인이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e-메일에 의한 송달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방고등법원 판결에서도 e-메일에 의한 송달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메일의 진정성은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 미국 법률은 전자서명을 “계약 기타 기록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당해 기록에 서명할 의사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작성 또는 채택된 전자적 음향, 상징,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15 U.S.C. § 7006 이하 참조).

### 3. 인터넷상의 재판관할 문제

#### 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최소한의 접촉 이론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는 이른바 ‘적법절차’에 관한 조항이다. 적어도 이를 위반하지 않고 대인관할이 인정되려면 인터넷내셔널 슈 사건[*International Shoe v. Washington*, 326 U.S. 310 (1945)] 이래 확립된 ‘최소한의 접촉(또는 관련)’(minimum contact)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접촉 이론은 월드와이드 폭스바겐 사건[*Worldwide Volkswagen Corp. v. Washington*, 326 U.S. 310 (1980)]에서는 ‘의도적 이용’(purposeful availment)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아사히 메탈 사건[*Asahi Metal Industry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480 U.S. 102 (1987)]에서는 피고가 미국에서 일정한 활동을 하는 등 관할권 행사에 합리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sup>3)</sup>

사이버공간에서도 최소한의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다음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오하이오주의 등록법인인 컴퓨서브사는 웨어웨어 배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패터

3)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관례(예: 대법원 1995.11.21 선고 93다39607 판결)와 국제사법은 실질적 관련(substantial connection) 원칙을 도입(국제사법 2조 1항)하였다. 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은 버거킹 사건[*Burger King Corp. v. Rudzewicz*, 471 U.S. 462 (1985)] 이후 실질적 관련이나 의도적 이용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접촉 원칙을 구체화한 바 있다.

슨이라는 사람도 텍사스주에서 웨어웨어 대리점을 하면서 이를 컴퓨서브사의 웹사이트에 연결하였다. 패터슨이 컴퓨서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컴퓨서브사는 오하이오주에서의 채무부존재 등을 다투고 패터슨은 컴퓨서브사에 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제6지구 연방고등법원은 패터슨이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하여 컴퓨서브사에 접속, 동사의 웹사이트 계약을 승인하였고 오하이오주의 시스템에 계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접촉(active contact)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의 접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CompuServe, Inc. v. Patterson, 89 F.3d 1257 (6th Cir. 1996)].

일반적으로 법원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수동적으로 광고나 정보교환의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접촉을 인정하지 않지만, 웹사이트를 통하여 관할지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이를 긍정한 사례로는 사이버골드 사건[Maritz, Inc. v. Cybergold, Inc., 947 F.Supp. 1328 (E.D. Mo. 1996)]이 있다. 미주리주에서 사이버골드라는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캘리포니아주에서 cybergold.com을 통하여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광고업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피고에 대해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피고가 예외없이 송신을 하고 있는 점, 피고가 미주리주에서도 이용자들로부터 메일링 리스트의 신청을 받은 점을 들어 최소한의 접촉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웹상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접촉을 인정한 사건[Zippo Manufacturing Co. v. Zippo Dot Com, Inc., 953 F.Supp. 1119 (W.D.Pa. 1997)]도 있다.

반면 이를 부정한 케이스로는 제2지구 연방고등법원의 벤수산 레스토랑 사건[Bensusan Restaurant Corp. v. King, 126 F.3d 25 (2d Cir. 1997)]이 있다. 뉴욕의 유명한 재즈 클럽 블루노트를 경영하는 원고가 미주리주에서 블루노트라고 하는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그가 인터넷 상에 점포안내 광고를 게재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인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전통적인 최소한의 접촉 요건(원고 관할지에 사무소가 있는지 여부)을 보완하여 사이버공간에서도 최소한의 접촉이 있어야 하며 “웹을 만들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사이버공간에서의 대인관할권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관할권이 부정되는 사건[McDonough v. Fallon McElligott, 40 U.S.P.Q. 2d (BNA) 1826 (S.D.Cal. 1996)]도 종종 나오고 있다.

#### 나. 남 타이 사건(2001년)

이 사건[Nam Tai Electronics v. Titzer, (113 Cal. Rprt. 2d 769 (Nov.26, 2001))]은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기사를 게재한 사람에 대한 소송사건이다. 티처는 콜로라도주에

사는 야후(Yahoo!)의 등록회원으로서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홍콩 거점의 제조업체이자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남 타이(Nam Tai Electronics)사의 주식에 대하여 이를 헐뜯는 기사를 야후 게시판에 246회나 게재하였다. 남 타이사는 명예훼손 등을 소송원인으로 하여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남 타이사는 야후의 이용조건에 “양 당사자는 캘리포니아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sup>4)</sup>는 합의관할 조항이 있음을 들어 동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가 “타인에게 명예훼손이 되는 메시지를 게시판에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야후의 이용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티처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첫째, 남 타이사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인이 아님에도 야후에 대하여 게시판에 올린 자료를 공개시킬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둘째, 티처의 발언은 캘리포니아주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셋째, 야후의 게시판 관리자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만 야후는 세계적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게시판은 쌍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 넷째, 티처는 캘리포니아주 밖의 콜로라도주에서 살면서 현지 PC를 이용하여 야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항소심에서 남 타이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피고가 소송진행준비절차 질문서(status conference questionnaire)를 제출하고 소송진행준비절차(status conference)에 출석한 것은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의를 남기지 않은 출석’(general appearance)에 해당한다. (2) 캘리포니아주 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웹에 계속적으로 접속(interact)한 것을 볼 때 관할권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의도적 활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의 결론은 맞지만 캘리포니아주에 재판관할권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야후의 이용조건은 등록회원과 야후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한 이용자나 제3자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티처의 온라인상의 행위는 비록 캘리포니아주를 향한 것이지만 캘리포니아주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special impact)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사이버공간에서 어느 국가 또는 주와 최소한의 접촉이 있다고 보려면 그 곳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위 내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온라인 계약만 가지고는 관할권을 주장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일반적인 규약이 있더라도 이의 적용범위는 제한적임이 드러났다.

4) 남 타이 사건 이후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귀하와 야후는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 카운티에 소재하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 4. 온라인 계약 집행상의 문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은 주로 쉬링크-랩(shrink-wrap) 또는 클릭-랩(click-wrap) 계약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sup>5)</sup> 온라인상에서는 주로 클릭-랩 계약에 의하는 바, 핫메일사[*Hotmail Corporation v. Van\$ Money Pie, Inc.*, No. C-98 JW PVT, ENE, C98-20064 JW (Apr. 16, 1998)] 사건을 계기로 이용자 규정을 망라한 클릭-랩 계약의 법적 구속력과 이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소송이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온라인상의 클릭-랩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지만, 온라인 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 방법은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온라인 계약의 집행 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 가. 한다-로페스 사건(1998년)

이 사건[*Thompson v. Handa-Lopez, Inc.*, 998 F.Supp.738 (WD.Tex. 1998)]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분쟁해결 조항을 둘러싸고 그 유효성이 문제되었다.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톰슨은 한다-로페스사로부터 약속한 도박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텍사스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다-로페스사는 사이트의 클릭-랩 계약조건에 기재된 대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재를 받기로 하고 이송을 신청하였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텍사스주에서 이루어진 인터넷 거래인 이상 텍사스주의 대인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중재조항이 온라인 계약 저 안에 깊숙히 기재되어 있어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함을 명확히 알 수 없는 (insufficient notice) 것도 이유의 하나였다. 한다-로페스사는 텍사스주에서 재판을 계속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텍사스주의 사기거래방지법(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에 의하여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을 포함한 엄청난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

##### 나. 넷스케이프 사건(2001년)

이 사건[*Specht v. Netscape Communications Corp.*, 150 F.Supp. 2d 585 (S.D.N.Y., July 5, 2001)]은 클릭-랩 계약은 아니라 브라우즈-랩(browse-wrap) 계약

---

5)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통상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상자를 개봉함으로써(쉬링크-랩 방식), 또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동의함]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클릭-랩 방식)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된다. 미국의 UCITA에서는 이를 일반시장 계약(mass-market license agreement)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그 밖에 브라우즈-랩 방식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문제가 된 경우이다. 브라우저-랩 계약이란 [동의함](I agree)에 클릭할 필요 없이 당해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는 넷스케이프사의 웹사이트로부터 스마트다운로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때<sup>6)</sup>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넷스케이프사는 라이선스 계약 및 이용조건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버지니아주에서 중재를 받기로 하고 이송을 신청하였다.

뉴욕주 연방법원은 “수령 버튼을 클릭하거나 넷스케이프 스마트다운로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용함으로써 이 제품의 이용을 허락 받은 개인이나 기업은 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왜냐하면 라이선스 계약으로의 [링크](계약체결)가 [다운로드] 밑에 기재되어 있어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내려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없는 계약은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다운로드하는 것의 주된 목적은 계약조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취득하는 것인데, [동의함](I assent)이라는 버튼을 주의하지 않고 만든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종전의 티켓마스터 사건[Ticketmaster Corp. v. Tickets.com, Inc., 2000 U.S. Dist. LEXIS 12987 (C.D.Cal., August 10, 2000)]을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용조건에 링크는 되어 있지만 웹사이트에 계약조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와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 다. 넷츠카운트 서비스 사건(2002년)

이 사건[I. Lan Systems v. Netscount Service Level Corp., Civ. Act. No.00-11489-WGY (D. Mass., January 2, 2002)]에서 원고는 규약에 기재된 주문서(purchase order)대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다시 새로 클릭-랩 계약이 나타나 이용자에게 추가의 책임제한조항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원 계약에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적인 계약조항은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두 가지 종류의 클릭-랩 계약에 합의한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래 미국의 계약이론 및 통일상법전(UCC)에 비추어보더라도 이용자가 추가조항에 대하여 거부하지 아니하고 추가조항이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

6) 넷스케이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넷스케이프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웹 페이지 <<http://wp.netscape.com/download/smartdownload.html>>[2003.6.14]로 이동하여 스마트다운로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이를 사용하게 된다.

양자가 추가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UCC § 2-207).

#### 라. 인터넷 소송에 관한 입법동향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의하면 중재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9 U.S.C. § 2). 온라인 계약에서 클릭하는 것만으로 중재의 합의가 있다고 보는지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 앞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컴퓨터 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클릭으로 체결된 계약은 서면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UCITA를 채용하고 있는 메릴랜드주나 버지니아주에서는 클릭에 의한 계약도 유효하다고 보게 될 것이다.

연방전자서명거래법(Federal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에서는 웹 사이트에서 체결된 계약의 증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전자기록의 법적 유효성은 모든 관련당사자에 의하여 보유하고 재생될 수 있으면 법적 효과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통일전자상거래법(Uniform Electronics Transactions Act: UETA)은 28개 주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만일 전자적 기록의 송신자가 수령자에 의한 보존 내지 인쇄를 불가능하게 할 경우 그 기록은 수령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기준을 두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인쇄 및 보존 기능을 갖추지 않은 팝업 윈도우(pop-up window)에서 작게 보여주는 온라인 계약은 집행불가능한 것이 된다. 그리고 온라인 기업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동일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한국경영법무연구소, 「경영법무」 N0.112 (2003. 7)>